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85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조례명을 변경하여 특별회계로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및 기 지원된 융자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나.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의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 다.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 : “3,000만원”을 “5천만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 라. 융자상환기간의 선택적 운영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마. '03년 1월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 감면 : “3%”→“2%”(부칙제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라 함은 다음의 품목을 말한다.
 - 가. 1지역1명품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품목
 - 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지역 농특산물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③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운용계획)** ①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특별회계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계획
 3.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사업지원)**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
 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4.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
 6.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3항중 “개발기금을”을 “사업비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제5조 소정의 사업비는 용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2. 운용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는 5억원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용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한다.

③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를 “충청북도농어촌 개발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중 “기금”을 “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제12조 내지 제1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20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며,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2003.1.3 조례 제2730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이미 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농·수산물의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기금(이하 "개발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농촌지도자"라 함은 <u>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지키면서 소득개발을 위한 능력이 있는 자로 4H회원, 농업(어업·임업포함)인 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와 기타 영농에 성실히 앞장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u></p> <p>2. "개발기금"이라 함은 <u>이 조례에 의하여 의하여 농·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어촌소득 개발에 투자되는 기금을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u>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p> <p>-----</p> <p>1. "농·어업인"이라 함은 「<u>농업·농촌기본법</u>, 제3조제2호 및 「<u>수산업법</u>,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p> <p>2. "생산자단체"라 함은 「<u>농업·농촌기본법</u>,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p> <p>3. "법인체"라 함은 「<u>농업·농촌기본법</u>,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4. "지역명품"이라 함은 다음의 품목을 말한다.</p> <p>가. 1지역1명품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품목</p> <p>나.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지역 농특산물</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개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생략)</p> <p>③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발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개발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개발기금운용에 관한 사항</p>	<p>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기금특별회계 -----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제5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p>
<p>제4조(운용계획) ①개발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개발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p> <p>2. 해당연도 개발기금 사용계획</p> <p>3. 개발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자원에 관한 사항</p> <p>4. 기타 개발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4조(운용계획의 수립) ①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p> <p>②----- 기금특별회계 -----.</p> <p>1. 기금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p> <p>2.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계획</p> <p>3.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자원에 관한 사항</p> <p>4.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삭제)</p>
<p>제5조(대상사업) 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농어촌지도자육성을 위한 소득개발사업</p> <p>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p> <p>3. 농어촌소득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사업</p> <p>4. 1지역1명품 육성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사업지원)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농·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p> <p>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p> <p>3. 농어촌소득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사업</p> <p>4.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p> <p>5.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p> <p>6.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신 · 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개발기금을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사업비----- -----.</p>
<p>제7조(사업비 지원)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은 농어민은 3,000만원 이내로 하며 작목반 등 농어민조직은 1억원 이내로 한다. 2. 운용자금은 농어민, 작목반 등 농어민조직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3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생략)</p>	<p>제7조(사업비 지원) ①제5조 소정의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1. -----농·어업인은 5천만원-----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2억원----- 2.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3천만원----- 다만, -----매입 및 가공----- 5억원----- ③(현행과 같음)</p>
<p>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단서신설) ②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생략)</p>	<p>제8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 ③(현행과 같음)</p>
<p>제9조(융자금의 회수) ①(생략)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농어촌 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생략)</p>	<p>제9조(융자금의 회수) ①(현행과 같음) ②----- -----충청북도 농어촌 개발기금특별회계에----- ③(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개발기금운용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특별회계 업무는 농정국에서 관장한다.</p>	<p>제10조(삭제)</p>
<p>제11조(세입·세출) ①~②(생략)</p> <p>③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분임징수관은 기금주무과장, 수입금출납원은 기금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제10조(세입·세출)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이하 단서삭제)</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개발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2조(삭제)</p>
<p>제13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용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 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1조(감독) -----기금특별회계의----- ----- ----- -----</p>
<p>제14조(생략)</p>	<p>제12조(현행과 같음)</p>
<p>제15조(생략)</p>	<p>제13조(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7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이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